

'24년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안내

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

구분	육아휴직·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	대체인력 지원금
지원대상	·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	·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휴가,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
지원내용	<p>(육아휴직 지원금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· 만 12개월 내 자녀 대상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<p>(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· 육아기 단축을 세 번째 허용한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급 ·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,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·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 ·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휴가, 육아기 단축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
지원요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③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시 지급,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시 지급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2개월 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②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③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,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④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제한기간 적용 (위반 시 환수조치)

□ 일·생활 균형 지원제도

구분	일·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		워라밸일자리 장려금	
	유연근무 장려금	일·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	소정근로시간 단축지원	실근로시간 단축지원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우선지원대상기업*, 중견기업 * 제조업: 500인 이하, 건설업·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: 300인 이하, 도소매·숙박 등 200인 이하, 기타 100인 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· 근무혁신 우수기업* * 일·생활 균형 환경 조성을 위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사업을 통해 선정된 우선지원 중견기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족돌봄·본인건강·은퇴준비·학업 등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수립,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(최대 1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택원격근무 최대 360만원 - 시차출퇴근 최대 240만원 - 선택근무 최대 240만원 *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·원격·선택근무는 상향지원(+10만원) ·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%(최대 70명 한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택·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·정보보안 시스템* 투자비 지원 (사업주 투자 비용의 50~80%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지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VPN, 원격접속,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 · 유연근무(재택·원격·시차·선택)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* 투자비 지원*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그룹웨어, 출·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(노트북, 건물 임차비용 등 제외) ** 사업주 투자 비용의 70%, 연 250만원 기준(3년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려금: 월 최대 30만원 - 임금감소액보전금: 월 최대 20만원 · 지원인원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% ·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, 3개월 단위 신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려금 1인당 월 30만원 · 지원인원 지원대상 근로자의 30% (최대 100명) ·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, 3개월 단위 신청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통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h~40h 이하 ②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·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 전자적·기계적 방식으로 출·퇴근 시각을 기록·관리 · 선택근무제 ①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②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 근로자 대표와 합의 · 시차출퇴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시만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 심사승인 ② 참여신청일 이후 철치·취득하는 프로그램·시설·장비 지원 ③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* 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최대 3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~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③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④ 근로시간 단축중 연장근로 제한(월 10시간) ⑤ 최초 1개월(임신사유시 2주)이상 단축 제도 활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* 단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+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근태관리 전자기계 방식으로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 관리

□ 고용안정장려금 공통사항

○ 사업소개

- **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**은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,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- **일·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**은 소속 근로자가 일·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·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,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- **워라밸일자리 장려금**은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장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,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,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기업전반의 실근로시간을 주당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
○ (온라인 신청경로) 고용24(www.work24.go.kr) 접속 → 기업회원 로그인 → 기업지원금 →

출산·육아/유연근무 검색

※ (문의) 국번없이 1350, 경주고용센터 담당자(054-778-2516,2532)